

CISG 규정과 해설

제 10주 제21조 – 30조

8. 지연 승낙 (제21조)

- (1) A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so informs the offeree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 (2)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shows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or in due time, the late acceptance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unless,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informs the offeree that he considers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① 지연 승낙에 대한 원칙

⇒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 or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 승낙의 효력 ○

② 수정원칙

⇒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서면상으로 이것이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 승낙의 효력 ○ (단,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 X)

9. 승낙의 철회 (제22조)

- An acceptanc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or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acceptance would have become effective.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10. 승낙의 효과 (제23조)

-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

11. 통신이 수신인에게 도달되는 시기 (제24조)

-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n offer,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any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reaches" the addressee when it is made orally to him or delivered by any other means to him personally, to hi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r, if h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to his habitual residence.

① 의사표시가 구두로 수신에게 도착된 때

② 기타 수단으로 개인적으로 수신에게 배달된 때

③ 영업장소 또는 우편 송부장소(주소)에 배달된 때

④ 만약 영업장소도 우편 송부장소도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주지에 배달된 때

1. 중대한 위반의 정의 (제25조)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1) 중대한(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

- 중대한 위반: 일방의 당사자가 범한 계약위반이 위반 당사자가 예상하지 않았거나, 동일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 중대한 위반의 경우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계약해제, 구제권, 대체물 인도요구권 부여

(2) 주요한 위반의 입증책임 : 주장하는 당사자

(3) 주요한 위반이 되기 위한 3대요건

- ① 손실(detriment) ⇒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위반한 당사자나,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손실
- ② 실질적인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 ⇒ 불편을 주지 않고 적절한 기간내에 보완할 수 있다면 기본적 위반이 아님.
- ③ 예견(foreseeability) ⇒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종류에 속한 합리적인 사람에 의한 예견

- PICC상의 중대한 위반 (Article 7.3.1)

- (1) A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 failure of the other party to perform an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 (2) In determining whether a failure to perform an obliga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regard shall be had, in particular, to whether
 - (a) the non-performance substantially deprives the aggrieved party of what it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other party did not foresee and could not have reasonably foreseen such result;
 - (b) strict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which has not been performed is of essence under the contract;
 - (c) the non-performance is intentional or reckless;
 - (d) the non-performance gives the aggrieved party reason to believe that it cannot rely on the other party's future performance;
 - (e) the non-performing party will suffer disproportionate loss as a result of the preparation or performance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 (3) In the case of delay the aggrieved party may als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before the time allowed it under Article 7.1.5 has expired.

- 일방의 당사자의 계약이행 의무해태에 따른 중요한 이행불이행 ⇨ 계약취소가능

- 의무이행 해태가 중요한 이행불이행 해당여부 판단기준

- ① 피해 입은 당사자가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하에서 기대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는지 여부
- ②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법적 일치가 계약하에서 필수적인지 여부
- ③ 이행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것인지 여부
- ④ 피해 입은 당사자가 타방의 장래 이행을 신뢰할 수 없음을 믿을 만한 근거로 이행불이행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행준비와 이행의 결과로서 이행불이행 당사자가 불균형한 손실을 입을지 여부

- 이행지체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이 제 7.1.5조에 따라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제의 통지 (제26조)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1) 해제통지의 중요성

- 해제선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 계약은 해제
- 채택 이유 ⇨ ① 더 큰 손실을 방지 ② 악용의 소지를 방지

(2) 통지수단 : 구두, 서면 등 어떤 통신수단

- PICC (Article 7.3.1)

(1) The right of a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exercised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2) If performance has been offered late or otherwise does not conform to the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will lose it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it gives notice to the other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it has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offer or of the non-conforming performance.

이행이 늦게 제공되거나 기타 계약에 불일치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그 제공 또는 불일치한 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상실한다.

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또는 불착 (제27조)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통신의 전달과정에서의 지연, 오류 또는 불착은 그 당사자에게 통신이 전달되었다고 믿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 즉, 물품매매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의무 박탈 X ⇒ 발신주의 채택
 - 즉, 발송자의 통지, 요청 또는 기타 통신들은 발송함에 따라 효력 인정, 수신여부에 관계없음. => **합리적 or 비합리적 (?)**
 - **예외규정 (도달주의) : 47(2), 48(4), 63(2), 65(1), 65(2), 79(4) 등**
- **PICC (Article 1.9)**
 - (2) A notice i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person to whom it is given.
 - 통지 = 도달한 때 효력 발휘

4. 특정이행과 국내법 (제28조)

-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ne party is entitled to requir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by the other party, a court is not bound to enter a judgement for specific performance unless the court would do so under its own law in respect of similar contracts of sal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이 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할 의무가 없는 한, 법정은 특정이행을 위한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 특정이행에 대한 영미·대륙법의 입장
 - 대륙법: 피해 당사자에 의한 **특정이행요구권** 인정
 - 영미법: 피해 당사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특정이행요구권은 특수한 경우(손해배상금이 적절한 구제가 되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

5. 계약변경 or 종료 (제29조)

- (1) A contract may b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of the parties.
- (2)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provision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writing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agreement. However, a party may be precluded by his conduct from asserting such a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the other party has relied on that conduct.

- (1) 계약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 (2) 서면합의에 의해서 수정이나 종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표시하고 있는 서면계약은 다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방이 자신의 행위를 신뢰한 범위까지 상기의 규정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 단순합의에 의해 계약변경 또는 종료 가능

② 변경에 의한 계약상의 제한

- 서면합의에 의한 수정이나 종료 규정을 표시 한 경우 - 다른 합의에 의한 수정, 종료 불가
- 행위 경우 - 신뢰한 범위까지 주장 X (금반언의 원칙)

- PICC - 당사자들의 합의 or 명시한 규정에 의해서 수정, 종료

1. 매도인 의무 요약 (제30조)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

- ① 물품을 인도하는 것
- ② 물품에 관한 서류를 인도(교부)하는 것
- ③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 **의무내용**은 준거법 적용

물품인도와 소유권이전

1. 점유권(Possession)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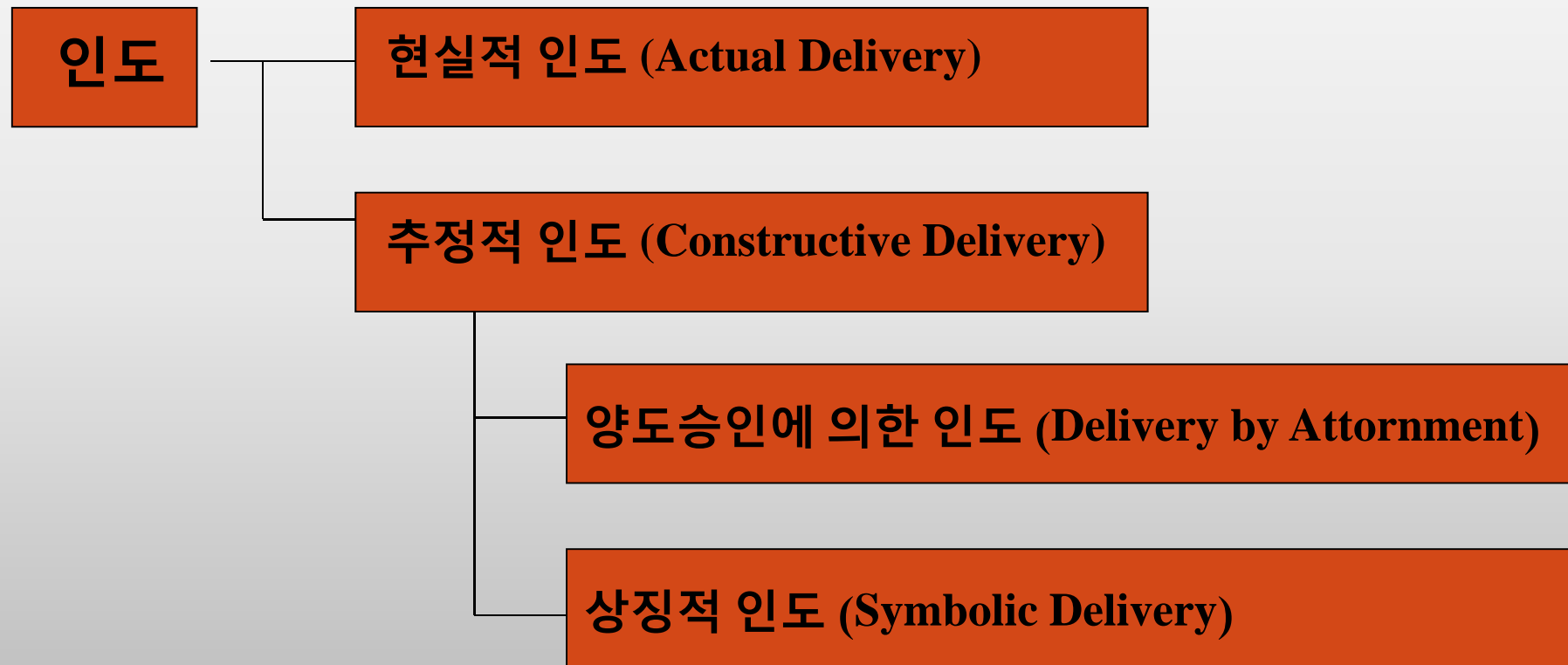
1) 개념

물품의 인도(Delivery)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목적물의 점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점유권(Possession)은 물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

▶ 각국의 법률 및 국제무역 법규상의 인도의 정의

SGA	인도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의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것 (61조1항)
CISG	인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단지 계약내용 및 비엔나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기는 것, 즉 특정을 통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
INCOTERMS	인도의 정의는 없고 매도인의 의무규정의 A.4에서 인도라는 표제에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
한국 민법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점유는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19조 1항)

2) 인도의 방식



-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하는 것

- **추정적 인도 (Constructive Delivery)**

- ①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

- Ⓐ 점유개정(占有改定)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계속하여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 간이양도 : 매매되기 전에 물품은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점유이전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매매 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뜻을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이 제3자가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 ②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선적서류의 하나인 B/L이 계약물품의 상징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품은 대체로 수탁자(운송인)가 점유하고 있고 권리증권의 인도로 실제의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3) 물품의 인도시기 및 장소

- 매매계약서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 적출지인도와 양륙지인도
 - 출하지 제공조건인 매매계약을 적출지 인도계약(Place-of-Shipment Contract)
 - 인도 제공장소가 목적지 제공조건인 매매계약을 양륙지 인도계약(Place-of-Destination Contract)

▶ 각국의 법률 및 국제무역 법규상의 인도시기

SGA	인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CISG	① 합의 관행에 의하여 인도기일이 확정 : 당해일에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② 인도에 대한 기간이 약정되고 이 기간 중 매수인이 인도시기를 결정 :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사전통지가 필요하며, 적절한 통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인도가 지체된 때에는 매수인이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인도시기가 약정되지 않은 경우 :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물품을 인도
INCOTERMS	계약에서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 구체적인 인도 시기는 계약조항 및 각 개별조건에 두고 있음
민법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각국의 법률 및 국제무역 법규상의 인도의 장소

<p>SGA</p>	<p>① 운송을 약정하는 경우 :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곳 ② 운송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둔 곳</p>
<p>CISG</p>	<p>① 운송을 약정하는 경우 :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곳 ② 운송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둔 곳</p>
<p>INCOTERMS</p>	<p>계약에서 지정된 장소, 구체적인 장소는 계약조항 및 각 개별조건에 두고 있음</p>
<p>민법</p>	<p>① 특정물의 경우 : 계약체결 시 물품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 ② 불특정물의 경우 : 매수인의 영업장소</p>

2. 소유권(Property)의 이전

1) 의의

물품에 대한 소유의 권리로 그 물품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2) 소유권이전방식

·각국의 법률 및 국제무역 법규상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

SGA	① 불특정물: 물품이 특정되기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 ② 특정물: 계약당사자가 물품의 이전을 의도한 때
CISG	소유권이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
INCOTERMS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음
민법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며 인도를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함. 환어음부 매매인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

3) 소유권이전시기

(1) 특정물과 불특정물

① 특정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이전

② 불특정물

물품을 인도 가능한 상태에 두고 무조건계약에 충당시킬 때, 즉 불특정물을 특정물화 한 때 이전

➤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되어 특정물로 되는 시점

Ⓐ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인도할 때,

Ⓑ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탁자(운송인)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때이며 계약에 충당하는 행위

(2)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

① 현실적 인도 : 물품의 인도시기에 소유권이 이전

② 상징적 인도 : 매도인이 권리증권을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매도인이 그 증권을 교부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소유권은 이전

4) 소유권(담보권) 유보

(1) 개념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된 물품 선적시에 소유권이 이전하지 아니하고 선적서류가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유보

(2) B/L발행방식에 따른 소유권이전시기

B/L이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는지 또는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물품의 선적시에 소유권이 이전하느냐 또는 대금 지급시에 이전하느냐가 결정

3. 위험의 이전

1) 개념

- 물품의 멸실(Loss) 또는 손상(Damage)의 염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그 물품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를 위험부담
-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위험의 이전

2) 위험이전원칙

-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에 관하여 무역계약에서 "INCOTERMS 2000"에 준거하여 FOB나 CIF매매조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의 의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합의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관한 입법주의는 세가지로 구분
 - 채무자주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
 - 채권자주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 소유자주의: 물건의 멸실·손상·훼손 당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부담

3) 위험이전에 관한 諸規定

▶ 위험이전과 관련된 각 법제의 규정

SGA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규정
CISG	운송을 약정한 매매계약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운송 중의 물품의 매매의 경우 계약체결 시, 운송을 약정하지 않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INCOTERMS	매도인의 의무 A.5와 매수인의 의무 B.5에서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구분	운송	통관	인도시점	위험분기	비용분기
EXW	관계X	수출 수입 매도 X X 매수 O O	매도인이 작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
FCA	복합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장소·지점에서 매수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 도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
FAS	해상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 측에 인도되었을 때	=인도시점 (선측난간)	=위험의 이전
FOB	해상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 에 의해서 지정된 선박 의 갑판상에서 인도	=인도시점 (선측난간통 과완료)	=위험의 이전

구분	운송	통관	인도시점	위험분기	비용분기									
CFR	해상	<table border="0"> <tr> <td></td> <td>수출</td> <td>수입</td> </tr> <tr> <td>매도</td> <td>O</td> <td>X</td> </tr> <tr> <td>매수</td> <td>X</td> <td>O</td> </tr> </table>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상에서 인도	=인도시점 (선측난간 통과완료)	FOB + 해상운임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CHF	해상	<table border="0"> <tr> <td></td> <td>수출</td> <td>수입</td> </tr> <tr> <td>매도</td> <td>O</td> <td>X</td> </tr> <tr> <td>매수</td> <td>X</td> <td>O</td> </tr> </table>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상에서 인도	=인도시점 (선측난간 통과완료)	FOB + 해상운임 + 보험료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CPT	복합	<table border="0"> <tr> <td></td> <td>수출</td> <td>수입</td> </tr> <tr> <td>매도</td> <td>O</td> <td>X</td> </tr> <tr> <td>매수</td> <td>X</td> <td>O</td> </tr> </table>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인도시점	FCA제비용 + 운송비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CIP	복합	<table border="0"> <tr> <td></td> <td>수출</td> <td>수입</td> </tr> <tr> <td>매도</td> <td>O</td> <td>X</td> </tr> <tr> <td>매수</td> <td>X</td> <td>O</td> </tr> </table>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 ”	=인도시점	FCA제비용 + 운송비 + 보험료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구 분	운송	통관	인도시점	위험분기	비용분기
DAF	관계X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
DES	해상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둔 때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
DEQ	해상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지정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둔 때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
DDU	관계X	수출 수입 매도 O X 매수 X O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단, 관세불포함)
DDP	관계X	수출 수입 매도 O O 매수 X X	“ ”	=인도시점	=위험의 이전(단, 관세포함)